

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, 사업장의 상시근로자
수,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(제20조제1항 관련)

사업의 종류	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	보건관리 자의 수	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
1. 광업(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	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	1명 이상	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선임 해야 한다.
2. 섬유제품 염색,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			
3. 모피제품 제조업	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천명 미만	2명 이상	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선임 해야 한다.
4.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 조업(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하 다)			
5. 모피 및 가죽 제조업(원피가 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하 다)	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	2명 이상	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선임 하되, 같은 표 제2 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 어야 한다.
6.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			
7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		
8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업; 의약품 제외			
9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업			
10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		
11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		
12. 1차 금속 제조업			
13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			
14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		
15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		
16. 전기장비 제조업			
17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		

18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. 가구 제조업 20. 해체,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1. 자동차 종합 수리업, 자동차 전문 수리업 22. 제8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			
23. 제2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	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	1명 이상	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.
	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	2명 이상	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.
	상시근로자 3천명 이상	2명 이상	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,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24. 농업, 임업 및 어업 25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6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(제20호에 해당하	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. 다만, 제35호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5천	1명 이상	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.

는 사업은 제외한다)	명 미만으로 한다.		
27. 운수 및 창고업 28. 도매 및 소매업 29. 숙박 및 음식점업 30.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31. 방송업 32. 우편 및 통신업 33. 부동산업 34. 연구개발업 35. 사진 처리업 36.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 스업 37. 공공행정(청소, 시설관리, 조 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 정한다) 38.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·중등· 고등 교육기관, 특수학교·외국 인학교 및 대안학교(청소, 시 설관리,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) 39.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0. 보건업 41. 골프장 운영업 42.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(제 2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한다) 43. 세탁업	상시 근로자 5천명 이상	2명 이상	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선임 하되, 같은 표 제2 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 어야 한다.
44. 건설업	공사금액 800억원 이상(「건설산업	1명 이상 [공사금	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	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종합공사 를 시공하는 업 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 목공사에 속하 는 공사의 경우에 는 1천억 이상)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	액 800억 원 (「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종합공사 를 시공 하는 업 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 목공사에 은 1천억 원)을 기 준으로 1,400억 원이 증 가할 때 마다 또 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 명씩 추 가한다]	하는 사람을 선임 해야 한다.
--	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